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80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6.

발 의 자:황운하·김병기·박상혁

위성곤 · 장경태 · 정성호

정일영 · 한병도 · 한준호

홍정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 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권 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.

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, 제18조제3항,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 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
- 제1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6.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 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

제20조제1항제1호 중 "출처"를 "출처(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내용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"를 "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으로 제공할 목적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2항, 제18조제3항,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(생	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	②
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	
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	,
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	
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	
를 받아야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
	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
	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
	급받는 대가의 내용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・	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・
제공 제한) ① · ② (생 략)	제공 제한) ① · ② (현행과 같
	음)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	3
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	
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	

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④ · ⑤ (생 략)

제20조(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 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)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 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 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

2.·3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 ~

- ③ (생 략)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④ 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
는 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
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
급받는 대가의 내용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
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
고지) ①
<u>.</u>
1출처(개인
정보를 유상으로 제공받은
경우 그 사실 및 개인정보처
리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대
가의 내용을 포함한다)
2.·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
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<u>홍보하</u>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~ ⑦ (생 략)

-----홍보하 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목 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적으로-----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